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9회 제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0. 6. 15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0. 5. 22.
- 회부일 : 2020. 5. 26. (의안번호 : 20-53)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
 - 「도로법」 제76조 → 「도로법」 제91조 (안 제1조, 안 제3조)
 - 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」 제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선납 원칙 및 예외 명확화(안 제3조제4항)
- 인용법령 현행화 (안 제3조의2제2항)
 - 「지방세기본법」 → 「지방세징수법」
- 순화대상 용어 정비 (안 제3조제3항, 별표1)
 - “구배” → “기울기”

4. 관계법령

- 「도로법」 제91조(원인자의 부담 비용 등)
- 「지방세기본법」
- 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」

5. 참고사항

-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
 - 2018년 : 1,223건 / 863,265천원
 - 2019년 : 1,190건 / 1,505,072천원
- 도로복구굴착기금 결산현황
 - 2018년 : 1,821,597천원
 - 2019년 : 2,218,359천원

6. 검토보고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 -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하여 (안 제1조, 안 제3조)에는 「도로법」 제76조에서 「도로법」 제91조로 변경하는 내용임.
 - (안 제3조제4항)에는 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」 제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선납 원칙 및 예외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임.

- (안 제3조의2제2항)에는 인용법령을 반영하여 「지방세 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변경하는 내용임.
- (안 제3조제3항, 별표1)에는 순화대상 용어를 적용하여 “구배”를 “기울기”로 변경 정비하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순화를 한 것으로 관계 법령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

다만, 원인자부담금이 선납부과원칙으로 납입되지만 예외규정으로 인한 체납이 될 경우 빠른 징수를 통해 도로굴착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